

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

산업경제위원회
2000. 6. 19.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2000년 5월 12일

· 회부일자 : 2000년 5월 12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174회 제1차 정례회

·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0. 6. 19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가. 제안 이유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김홍기)

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·시행에 따라 농지개량계 조직 운영을 정하는 현행 조례의 제명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 골자

○ 조례제명 변경

-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 ⇒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

○ 일부내용 변경

- 농지개량계 ⇒ 수리계
-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역제공 내용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유해영)

-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 규정하였으나
-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농지개량조합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이의 대체법령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
- 조례의 내용중 대체법령의 내용과 상이한 용어를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룬 요 지 : 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 : “ 원안 가결 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 없 음 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
9. 별 첨

- ◎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 - 충청북도지사 제출
- ◎ 신·구 조문 대비표
- ◎ 관련 법령

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농지개량계”를 “수리계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내지 제16조중 “개량계”를 “수리계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법제88조제1항”을 “법제4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내지 제14조중 “개량계원”을 “수리계원”으로 한다.

제9조내지 제15조중 “개량계장”을 “수리계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

1. 운영경비 :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

2.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: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

3. 기반시설의 감가삼각비 :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금액

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조제1항제1호중 “농지개량조합구역”을 “공사관리지역”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“농지개량조합”을 “농업기반공사”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“제1항제1호”를 “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. 다만,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

유치·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한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.

제3조(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○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개량계원의 자격) <u>개량계원</u> 이 될 수 있 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 다.	제7조(수리계원의 자격) <u>수리계원</u>
1. <u>개량계</u> 수해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 으로 사용·수익하는 토지소유자	1. <u>수리계</u>
2. <u>개량계</u> 의 수해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 으로 사용·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(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)을 가진자	2. <u>수리계</u>
제8조(총회) <u>개량계</u> 에 총회를 두며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. 다만, <u>개량계원</u> 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.	제8조(총회) <u>수리계</u>
제9조(임원)① <u>개량계</u> 에는 임원으로 <u>개량계원</u>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, 선출방법·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전 한다. ② <u>개량계장</u> 은 <u>개량계</u> 를 대표하며 <u>개량계</u> 업무를 담당한다.	제9조(임원)① <u>수리계</u> <u>수리계원</u> ② <u>수리계장</u> <u>수리계</u> <u>수리계</u>
제10조(개량계의 임무)① <u>개량계</u> 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	제10조(수리계의 임무)① <u>수리계</u>
1. ~ 2.(생략) 3. <u>개량계</u> 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② <u>개량계</u> 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·보수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	1. ~2.(현행 제1호 및 제2와 같음) 3. <u>수리계</u> 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② <u>수리계</u> 는
제11조(경비의 부과) ① <u>개량계</u> 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<u>개량계원</u> 에게 금전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	제11조(경비의부과) ① <u>수리계</u> 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<p>필요한 경우에는 개량계원에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개량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3.(생략)</p> <p>③ 개량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개량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조합”은 “개량계”로 본다.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</p> <p>1.~3.(현행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)</p> <p>③ 수리계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한에 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4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경비부과 조정신청)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량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개량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개량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도지사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개량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
	<p>제12조(경비부과 조정신청)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도지사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예산및회계) ① <u>개량계</u> 는 매 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연도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② <u>개량계</u> 는 연도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. ③ <u>개량계</u> 는 매 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④ <u>개량계</u> 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 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. ⑤ 도지사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<u>개량계</u> 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.	제13조(예산및회계) ① <u>수리계</u> ② <u>수리계</u> ③ <u>수리계</u> ④ <u>수리계</u> ⑤ <u>수리계</u>
제14조(서류의 비치) <u>개량계장</u> 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<u>개량계원</u> 의 열람요구가 있을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1. <u>개량계</u> 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. 규약, <u>개량계원</u> 명부 등 규약에 정한 서류	제14조(서류의 비치) <u>수리계장</u> <u>수리계원</u> 1. <u>수리계</u> 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. 규약, <u>수리계원</u> 명부등 규약에 정한 서류
제15조(<u>개량계</u> 해산) ① <u>개량계</u>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<u>개량계</u> 를 해산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1. 수혜지역이 <u>농지개량조합구역</u> 으로 편입된 때 2.~3.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<u>개량계장</u> 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	제15조(<u>수리계</u> 해산) ① <u>수리계</u> 는 <u>수리계</u> 1. 수혜지역이 <u>공사관리지역</u> 으로 편입 된 때 2.~3.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 ② <u>수리계장</u>

현 행	개 정 안
<p>1.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<u>농지개량조합</u></p> <p>2. <u>제1항 제1호 및 제3호</u>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개량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개량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. 다만, 기반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·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</p>	<p>1. <u>농업기반공사</u></p> <p>2. <u>제1항 제2호 및 제3호</u>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. 다만,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·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
<p>제16조(지도감독)① <u>개량계</u>는 도지사가 지도 감독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<u>개량계장에게 개량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6조(지도감독)① <u>수리계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<u>수리계장</u>..... <u>수리계</u>.....</p> <p>.....</p>

근 거 법령 발췌

【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】

- 제43조(수리계) ① 시·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하는 수리계를 조직·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 유지·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
- ③ 수리계는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④ 수리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대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·군수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·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·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,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】

제24조(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)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제1호의 조직기준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.

1. 수리계의 조직기준

- 가.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
- 나.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
- 2.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
 - 가. 운영경비 :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
 - 나.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 :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
 - 다.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: 설치사업비를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
- 3. 수리계의 해산기준
 - 가.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
 - 나.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의 설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
 - 다.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·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